



즉시 배포용: 2020년 9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주거 퇴거에 대한 유예가 2021년 1월 1일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퇴거로부터 주거 임차인을 추가로 보호하기 위해 주 임차인 세이프 하버법(Tenant Safe Harbor Act)이 2021년 1월 1일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은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존재했던 퇴거에 대한 임차인 세이프 하버법의 보호를 연장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팬데믹과 계속 싸우는 중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뉴욕 주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결과로 집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에서 회복하는 중에 임차인이 자신의 삶에 근본적인 안정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1월 1일까지 세이프 하버법의 보호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먼저 심각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임차인이 퇴거당하지 않도록 주거 및 상업 퇴거에 대하여 3월 20일에 주정부 모라토리엄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6월 30일에 즉시 발효된 임차인 세이프 하버법에 서명하였으며 주거용 임차인 및 집주인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추가 법안 또한 즉시 발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행정명령에서 늦은 임대료 지불에 대한 요금 또는 수수료가 금지되었으며,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여전히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업 퇴거 및 담보권 행사에 관한 주의 모라토리엄은 Cuomo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10월 2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매 시설 및 레스토랑을 포함한 비즈니스 소유주에게 팬데믹이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업 임대자 및 주택 담보 대출자를 위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보호 조치를 확대합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의 확대에 따라 상업 임차인 및 주택 담보 대출자에게 추가 시간을 제공하여 임대 또는 주택 담보를 처리하거나, 임대 기간을 재협상하고 다가오는 담보권 행사를 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